

수강신청 기본원칙 및 유의사항 안내

1. 수강신청 기본원칙

가. 수강신청 최소/최대학점

학 기	학 점			비 고
	최소학점	기준학점	최대학점	
일반학기	16	20	20	졸업학점을 고려하여 한 학기에 18학점 이상 수강하는 것을 권장
졸업직전학기	10	20	20	

- 기본개설 과목 중 전공 14학점 이상 수강신청 권장
- 공통교양, 타과수강, 동·서부 교차수강, 재수강 함께 최대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타과정 수강신청 불가 : 일반과정, 위탁과정, 전공심화과정, 계약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단, 위탁생은 공통교양 중 가상강좌는 신청 가능)
- 재수강 : 최대 4학점까지 수강 가능
- 상담과목 : 대학생활의이해, 창의인성(1)(2), 자기계발및진로탐구 - 각 0.5학점
- 최대 22학점 수강신청 가능 학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유아교육과, 식품영양학과, 사회복지학과(2년제), 융합안전공학(1학년1학기), 계약학과
- 최대 18학점 수강신청 가능 학과 :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골프산업과, 푸드케어학과, 인테리어시공학과, 2024학년도 이후 산업체위탁 교육과정 신입생
- 복수전공, 부전공 승인 학생은 최대 24학점 까지 수강 가능

나. 재수학(조기복학, 자진유급)으로 인한 중복학기 및 졸업유보자의 수업연한 이후 수강 학기는 해당학기에 한해 최소 수강학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 수강신청 16학점,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라. 교과목 안내

구분	정식명	약어	내용
교양	교양선택	교선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대학 졸업자로서 공통적인 지식과 교양 함양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
	교양필수	교필	
전공	전공선택	전선	해당 전공분야의 기본/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목
	전공필수	전필	
교직과목	교직	교직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의 학생이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
일반선택	일반선택	일반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교과목

마. 교과이수 관련 사항

- 1) 특정 교과목의 성적이 A+~D0 또는 SS(우수), S(충족)인 경우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 수강신청 시 각 학부(과, 전공)별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학년 및 학기에 배정된 기

본 수강과목을 우선 이수해야 한다.

3) 필수(교양필수,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졸업 불가

바. 재수강 및 성적취소 관련 사항(2018-2학기부터 재수강 제한성적 B+)

1) 재수강

가) 이수한 교과목이 C+이하인 경우 그 학점을 재수강 할 수 있다. 재수강 이수 시 이전 학점 자동 취소. 단, 성적증명서에는 “R_과목명”으로 표시됨.

나) 조기복학, 자진유급, 재입학 시 기존 이수학기를 다시 이수할 경우 기존의 이수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모두 취소 처리됨. 단, 조기복학 및 자진유급의 경우 성적유지를 원하는 과목은 성적인정원을 반드시 제출.

다)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면 해당 교과목의 기존 학점은 자동 삭제되어 복원되지 않으며,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학점만이 해당 교과목 성적으로 인정된다.

※ 재수강의 경우 기존에 이수한 학점은 삭제되므로, 평점평균의 상승은 기대할 수 있으나 이수학점 수는 증가하지 않음

㉠ 1학년 1학기 20학점을 이수하고 1학년 2학기에 재수강 2학점을 포함하여 20학점을 수강 신청한 경우 → 누계이수학점은 38학점이 됨.

라) 2014-2학기부터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 병행하여 표기되며,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전체성적에 반영

2) 성적취소 및 삭제 : 2014학년도부터 취득한 학점은 학점포기 불가(반드시 재수강을 통해서 학점을 재취득하여야 함)

2.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가. 졸업요건 확인

1) 일반과정(201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 복학자는 2018학년도 입학자 기준으로 졸업학점 적용)

	구분	전공	교양	교양 中 외국어	졸업학점	비고
2년제	2018 이후	50	10	2	74	
	성인학습자반	50	-	-	60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골프산업과, 푸드케어학과, 인테리어시공학과
3년제	2018 이후	72	14	2	110	
4년제	2018 이후	100	24	2	137	간호학과 교양 25

※ 전부(과) 학생은 전공 2년제 40학점 이상, 3년제 58학점 이상을 적용하며, 기타 요건은 동일

2) 편입학(2018 이후)

구분	전공			교양	교양 中 외국어	졸업학점 (인정학점 포함)
	1학년 편입	2학년 이상 편입				
2년제	50	인정 전공학점	있는 경우	50	신입학 졸업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74
			없는 경우	36		
3년제	있는 경우		72	110		
	없는 경우		54			
4년제	100	있는 경우	100	137		
		없는 경우	80			

3) 산업체위탁교육과정

가) 2024년도 이전

구분	전공	교양	교양 中 외국어	졸업학점
2년제		미적용		74
3년제		미적용		110

나) 2024년도 이후

구분	전공	교양	교양 中 외국어	졸업학점
2년제	50	미적용		60
3년제	72	미적용		90

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구분	전공	교양	교양 中 외국어	졸업학점
1년 과정		미적용		20
2년 과정		미적용		60

5) 전문기술석사과정

학과명	수료 요건
미래모빌리티제조학과 인공지능기반텔레헬스학과 바이오화학생산기술	전공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총 이수학점이 24학점 이상이며 평균 평점이 3.0(B0) 이상인 자

6) 필수과목(전공필수 및 교양필수)은 반드시 이수

나. 수강확인원 제출

- 1)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본인이 수강신청한 과목과 수강확인원에 기재된 과목을 비교한 후 수강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함
- 2) 제출기간 : 매 학기 수강정정기간 이내
- 3) 제출장소 : 각 학부(과) 사무실
- 4) 수강확인원 미제출시 수강 및 성적처리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㉔ 학생이 ○○○과목을 수강 신청한 것으로 알고 출석하고 시험을 쳤으나, 실제로 수강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㉕ 2년제 학생이 졸업직전학기에 누계 74학점(전공 50이상, 교양 10이상, 외국어 2 이상)으로 졸업요건에 맞게 수강 신청한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누계학점이 72 학점이 되어 졸업 유보된 경우

다. 특별학점 (문의 T. 052-279-3012, 279-3085)

- 1) 정규 교과과정 이외 사회봉사(봉사활동, 헌혈)나 영어(TOEIC, TOEFL) 등을 통해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2) 특별학점 신청기간 : 매학기 기말고사 기간 ※ 기간 외 신청 불가
- 3) 특별학점의 종류 : 2025년 기준 **최대 4학점**

가) 사회봉사특별학점(교양) : 헌혈 또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특별학점으로 인정

- (1) 학점인정 : 재학 중 최대 4학점(학기당 최대 1학점)까지 인정
(단, 헌혈 학점은 재학 중 2학점까지 신청가능)
- (2) 성적은 SS(우수), S(충족)로 표기되며, 수강신청학점에 미포함
- (3) 헌혈 : 입학일 이후 실시한 헌혈이 3회 이상 시 1학점 인정
- (4) 봉사활동 : 직전학기 특별학점신청 종료일 다음날부터 당해학기 특별학점신청 종료일 이내에 실시한 봉사활동으로 48시간 이상인 경우 1학점 인정(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나) 영어 특별학점(외국어교양) : TOEIC, TOEFL 시험을 통해 영어(1)(특별학점) ~ 영어(4)(특별학점) 과목으로 인정

(1) 취득학점은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성적은 아래와 같다.

과 목	점수분포	과 목	점수분포
TOEIC	750점 이상 : A ⁺	TOEFL (iBT)	79점 이상 : A ⁺
	700-749점 : A ⁰		71-78점 : A ⁰
	650-699점 : B ⁺		64-70점 : B ⁺
	600-649점 : B ⁰		57-63점 : B ⁰

(2) 성적취득일 : 직전학기 특별학점신청 종료일 다음날부터 당해학기 특별학점신청 종료일 이내의 시험 결과 성적표

다) K-MOOC/메타버시티 컨소시엄 강좌: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강좌 또는 메타버시티 컨소시엄 강좌를 수강한 학생에게 부여하는 학점(학습인정활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최대 1학점까지 취득가능하며, 최대 4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어학교육학점

- (1) 대상 : 국제교류원에서 개설한 어학교육을 이수한 학생
- (2) 어학교육 종료 후 국제교류원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학점 인정
(최대 2학점까지 인정, 학생 개별 신청 불가)